

조성토지 등(□ 토지 □ 건축물)의 매입신청서

※ □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30일	
신청인	① 성명			② 생년월일	
	③ 주소			전화번호	
매입 희망지	소재지 (잠정 지번)	지목	매입면적 (㎡)	㎡당 가격 (원)	토지가격 (원)
④ 신청자격	[] 후계농업경영인 [] 후계어업경영인 [] 전업농업인 [] 전업어업인 [] 영농조합법인 [] 영어조합법인 [] 농업회사법인 [] 어업회사법인 [] 피해농업인 [] 피해어업인 [] 기타				
⑤ 매각대금 납부방법	[] 일시납부 [] 분할납부				
⑥ 사용목적				사용개시 연월일	

「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□ 토지 □ 건축물의 매입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	-----------

조성토지 등의 매입신청 안내

제출 및 처리기관	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
작성방법	① 법인은 대표자의 명의를 적습니다. ②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 ③ 개인은 주민등록지 주소를,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주소를 적습니다. ④ 신청자격 - 후계농업경영인·후계어업경영인: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·후계어업경영인 - 전업농업인·전업어업인: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·전업어업인 - 영농조합법인·영어조합법인: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·군·구에 있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·영어조합법인 - 농업회사법인·어업회사법인: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·군·구에 있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·어업회사법인 - 피해농업인·피해어업인: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·어업인 - 기타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·군·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람,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대책이 필요하여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추천한 자 ⑤ 매각대금 납부방법: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에 표시합니다. ⑥ 사용목적: 토지 또는 건축물의 구체적인 용도를 적습니다(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·임산물의 생산·가공·저장·유통시설 단지, 말산업 관련 시설 용도, 시험·연구 및 교육·훈련 시설 등).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